

##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A Legal Problem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이학승(Lee Hak Seung)\*

#### 요 약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concept and theory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this matter. Especially concerns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that is violated by new media and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through case study and research of literature.

The article seek to find out the resolution of legal problem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The resolution is, in other words, that privac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shall be established as a part of efforts to protect personal data and to activat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Key Word :**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프라이버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 <목 차>

- |                                     |                          |
|-------------------------------------|--------------------------|
| I . 서론                              | IV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 |
| II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과<br>개인정보의 보호 | V . 결론                   |
| III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각국의 동향            | * 참고문헌                   |

#### I . 서론

오늘날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정보 네트워크화가 도래됨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뉴미디어를 상징하는 고도정보화 시대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개인정보의 사회적,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독립적으로 승인되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sup>1)</sup> 현대 이러한 정보에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 안산공과대학 국제통상과 교수.

1) Davis, Gorden B. & Olson, Margrethe 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cGraw-Hill Book Company, 1995.

가운데 사회전체의 시스템이 재편성되고, 우리들은 이러한 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국민생활의 각종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의 도입이 시도되고, 이것에 통신 네트워크나 인터넷의 보급에 의해 전에는 아날로그 형태로서 존재해온 정보가 멀티미디어, 디지털정보화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다. 그 결과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현재 여행대리점에 의한 여행권, 호텔의 예약과 크레디트 카드에 의한 서비스는 말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흡쇼핑, 흡뱅크, 인터넷뱅크 등의 시스템 계약에 의해 개인이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에 의거 직접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access)해서 전자거래가 진행되며, 컴퓨터도 국민의 생활에 아주 가깝게 근접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일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가결한 존재로서 각자의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 내지는 네트워크가 사회전반에 침투됨에 의해서 그것이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예측할 수 없는 효과와 편리성이 약속되어 오고 있고, 한편으로의 문제점으로서는 개개인에 관한 각종의 정보가 개인의 수중을 떠나 쉽게 타인의 수중에 집적되고, 또 이러한 집적된 개인정보가 그것이 가지는 고유의 사회적,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이유로 우리들이 모르게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서 널리 유통되어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개인의 실존(實存)에 대한 위기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보호

### 1.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의 개념

공공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거래분야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오늘날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을 데이터해서 컴퓨터 온 라인·네트워크 상에 띄워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각자 개인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시스템 계약을 매개로 자신의 사회적, 사적인 요구나 니즈(needs)에 대해 정확하게 실시간(real time)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편리성이 있다. 이들 각자 자신에 관한 정보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무원칙적으로 자기를 떠나서 타인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타인들 상호간 교환되어 제각각의 형태로서 변환되어 이용되게 되면 이미 그 정보는 나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소비, 구매활동 등에 있어서 타인에게 조종되어 지거나, 또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수중에 있어서 자신은 볼 수 없는 「자기의 정보」라고 하는 구조(데이터 체제)속에 들어가 버려서, 본래의 인간으로서 자기를 상실하거나, 존재적으로도 몰락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되는 한편, 여기에 반비례하여 데이터에서 구성된 허상이 오히려 자기자신보다 더욱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위기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고도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이용 일반에 대해서 이전부터 법률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sup>2)</sup>의 관점에서 그 침해에 대한 위협이 문제 가 되어, 그중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control)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모집, 축적, 이용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이것에 의거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유로운 인격의 전개 가능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인 중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는 대상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개인의 그러한 사생활에 대해서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권리 혹은 홀로 자유로이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인 것에 대해서,<sup>3)</sup> 오늘날 「프라이버시」개념으로서 논의의 대상가운데 있어서는 개인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밀할 수 있는 사적인 존재양식이나 사생활이 되는 상태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개인고유의 속성이라는 것, 그것 자체는 개인과는 분리해서 취급되는 것이 가능한 객체로서의 이행되어지는 것이고, 게다가 오늘날, 「프라이버시 권리」의 내용으로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으로 제창되고 있지만,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컬을 수 있다.<sup>4)</sup> 「정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고유의 사회적,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과 함께, 개인정보의 취급방법에 따라서, 그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인격적 권리에 심각한 침해의 위협을 줄지 모르는 고도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사생활」로부터 「개인정보」로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개인자신이 스스로의 사적·사회적 요구와 니즈에 대해 충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각각의(각양각색) 생활상의 정보를 사회의 공적, 사적인 제 조직에 수집, 축적 또는 이용되는 것을 일정한도 허락하고, 또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이용에 대해, 개인의 측에서 적절히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도하려는 법적 대응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적인 의미로서 프라이버시권의 적극적 측면은 이전의 전통적 프라이버시권에 의하면 프라이버시가 불

2) 1890년 Warren과 Brandais는 [Harvard Law Review]에 프라이버시권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 생활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로부터 무엇인가 도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고 하여 일반적인 개인의 비밀유지권 즉 인격권을 설정하였다.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a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 4, 1890, p. 194.

3) 1879년 간행된 Cooley 법관의 저서 불법 행위론(A Treatise on the Law of Torts)에서 홀로 자유로이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 파악하고 있다.

4) 즉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 정보의 통제권」을 개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되고 있다.

법행위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고의·과실이 존재할 것 ②당해 개인측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늘 사후적인 구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결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늘날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주체에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 보다 강력한 보호가 기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상과 같은 동향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시스템계약에서의 시스템에 관여하는 시스템제공자와 밴더사업자 등의 사업자가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는 통신의 비밀 혹은 영업기밀로서 그 조직 내에 보지(保持)되어,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된다거나 상호간에 교환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프라이버시를 문제로 하는 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지만 그러나 고도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그 자체가 가지는 고도의 경제적 가치를 이유로 그것이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유통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시스템 운용상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명목으로 무원칙하게 제 3자에게 제공된다거나 하는 현실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통신의 기밀, 영업기밀 등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와 문제점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현재의 우리 개인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일부분인 ATM이나 흠행킹<sup>5)</sup>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당시부터 이미 예상되어온 것이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직접 교환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과 관련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미 개인 각자의 월급은 직접 경리직원이 월급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은행의 컴퓨터로 기업의 구좌와 각 사원의 구좌로 데이터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또 개인각자의 전기료, 수도료, 텔레비전의 수신료, 가스대금, 전화료 등도 계좌이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직접현금을 수수하지 않는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더욱이 점포나 백화점, 슈퍼 등에서 상품을 구입한다던가 서비스의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은행, 신판회사,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발행하는 크레디트카드 혹은 쇼핑카드<sup>6)</sup>를 제시하면, 후에 결제는 결국 은행이나 신용판매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처리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전에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데이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스

5) 1999.10.1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전국 26개 은행의 흠행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총 642만9000명이고 내년은 7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9.10.10. 동아일보)

6) 1999년 6월말 현재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4369만 여장이고 연간시장규모는 70조원대로 알려져있다. (1999년9월30일자 동아일보)

스로 경제활동의 족적을 컴퓨터·데이터 시스템에 남겨두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상품을 산다고 하면 그가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상품에는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부착되어 있어서 금전등록기는 이미 각각의 상품의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가격 레벨을 판독할 필요 없이 바코드를 컴퓨터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POS<sup>7)</sup> 단말기의 스캐너에 의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상품의 종류, 가격, 색상, 사이즈, 스타일 등의 세부적인 상품정보를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일반고객이 단말기에 카드를 투입하는 것에 의해, 그 고객의 은행구좌가 판독되어 구좌잔고의 조회가 이루어져, 카드로부터 구입대금총액의 인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마트나 백화점의 구좌에도 동액의 금액이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속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고객은 최후에는 단말기로부터 나온 카드를 수취하고 구입한 상품을 가지고 귀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어떠한 색상, 사이즈 및 스타일의 상품을 언제 어디에서 구입했는가라고 하는 아주 자세하고 정밀한 정보를 카드의 보유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타인에게 파악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러한 고객의 구매 활동의 자세하고도 정밀한 데이터는 사업자에 있어서 효과적인 판매전략을 짤 수 있는 특별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 더욱이 백화점에서 상품을 물색하는 대신에 가정에 거주하면서 컴퓨터 단말기의 스크린을 보면서 물건의 구입이 가능한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나 역시 가정에 거주하면서 지불결제나 자금의 이체가 행해지는 홈뱅킹, 인터넷뱅킹, 홈 건강관리 시스템, 홈 건강진단 시스템, 홈 의료시스템,<sup>8)</sup> 홈 Information시스템 등의 전자거래시스템계약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불가능한 쌍방향통신으로 일컬어지는 뉴미디어 특성을 이용해서 가능한 것으로서, 이것을 이용하면, 누가, 언제, 어떠한 정보를 요청했는가가 어떠한 상품을 주문했던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기록되고, 이것을 조작 반복해서 이용하면 할수록 그 만큼 더욱더 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을 장악하는 자의 수중에 집적되게 된다.<sup>9)</sup> 게다가 이렇게 집적된 개인정보는 특히 전자상거래계약에 있어서는 시스템 제공자, 벤더, 신용공여자, 신용정보제공자, 계약 이행을 위한 배송업자 등, 시스템에 결합·통합된 각종의 시스템 관여자에게 걸쳐 관련될 수 있고, 이것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제공·교환되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조합·결합되어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들은 현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취급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가는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7) POS(Point of Sale System 판매시점정보관리제도) : 상품의 유통관리를 위한 제도인데 광학식 자동해석방식에 의하여 컴퓨터와 연결해서 상품의 판매관리(판매대금 결제 및 계산관리)와 재고관리 및 고객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모든 경영관리가 즉시 지시되는 System이다.

8) 인터넷 진료시스템까지 존재한다.

9) 엘빈토풀리, [제3의물결], 매일경제신문사, p. 340.

### 3.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대상과 방법

#### (1)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대상

오늘날까지 현대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자기정보의 컨트롤권은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사생활로부터 개인정보의 이행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정의로서 혼자있게 내버려 둘 권리 혹은 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부터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할 권리로의 전환을 인정함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자기(전자)화된 개인정보의 수집, 축적, 이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 왔지만 실은 이러한 새로운 치장에 의해 법률학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현대적인 프라이버시권론으로서 「개인정보 컨트롤권설」은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자기화된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타당한 프라이버시권론으로서 제창되어 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학설이 당초 특히 공법분야에서 정보공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프라이버시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깊은 분석이 없는 채로 방치되어 왔던 관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보호되어야 할 프라이버시 내지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막연하게 그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소위 컨트롤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라이버시 권리의 내용으로서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할 권리」라고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게 별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그 일반 이론적인 범위와 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등은 어떠한 범위의 것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도로를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 사람들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단편적인 다수의 정보를 취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모두에 대해서까지 도로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컨트롤권한이 미친다고 생각하게 되면,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자기의 개인정보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범률이론으로서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최저 한도의 요건으로서 사람을 특정의 개인으로서 인식되거나 식별되어야 할 수준에서의 정보라고 하는 의미로 한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을 설정해도 여전히 프라이버시의 내용 및 보호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설령 전통적 프라이버시권한이 현대적 프라이버시권론에 취합·대체 되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사생활에서 개인정보로 이행되어 왔던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전통적 프라이버시권론이 「프라이버시」의 내용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용되어 왔던 사생활의 내용이 자기자신의 정보 컨트롤권설에 의해 그것이 더 한층 확산되어온 관점이 있는 만큼 더욱더 깊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 (2)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호대상에 대한 분석

일본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대표적 판례인 「宴のあと」사건 판결은<sup>10)</sup>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경우 「사생활」보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을 재판상 인정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다만 이 판례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만으로서는, 「공개」이전의 단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정보 컨트롤권이 사전합성이나 도청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의 면까지 대상에 들어가는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권리의 인정하는 것으로서 등장해 왔던 것이지만,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기 정보 컨트롤권」은 일반 「사생활」의 보호와 결부시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권리의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총체로 하여, 이것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하는 권리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 내용은 사생활상의 보호라고 하는 법적 이익을 중심으로, 보다 한정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하는 권리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의 범죄 전과, 병력, 정치적 신조 등 소위 민감한 정보가 중심이 되고 이것을 프라이버시 고유 정보라 칭하고 다만 이러한 고유 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도에 있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정보도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외부정보는 그 형태와 그 출현한 국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의 정의로 그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은 프라이버시 내지는 프라이버시권한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해를 하면 좋은가 우리들은 이제까지 전통적인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현대에 이르러 「사생활」에서 「개인정보」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왔지만 여기에 이르러서도 재차 현대적인 프라이버시 권리 중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사생활 내지는 사적인 것과 단절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이론적인 병목지로 빠질 수 있어서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념의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타당한 출발점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이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독립해서 가치를 가지는 한편, 그 취급하는 방법이 어떠한 가에 따라서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는 프라이버시는 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따라서 「자기에게 대한 정보를 컨트롤하는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권리도 원칙적으로는 자기에 관해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미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① 자기의 정보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과 비교해서 보다 고차원적인 이익을 위해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② 일정의 구체적인 사회적 정황으로 보아 타인이 자기에 대해 일정의 형태와 내용을 가지는 정보를 수집, 보유 또는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기의 동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 하던가 혹은 타인의 그러한 행위가 자기 자신의 인격적

10) [インターネットの法律実務], [新日本法規], 1997, p. 212.

이익에 대해서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권리로서의 자기에 대해서의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은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하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우선 자기의 정보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과의 비교에 있어 보다 고차원적인 이익을 위해 정당화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자가 범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을 타인이 목격하고 목격자가 형사재판상 증인으로서 피고의 범죄를 증언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이 범죄를 행하고 있던 현장을 보았다고 하는 정보에 대해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던가,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금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정의 구체적인 사회적 정황에 있어 타인이 자기에 대한 일정의 형태와 내용을 가진 정보를 수집·보유 또는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기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타인의 그러한 행위가 자기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예를 들면, 사람이 병이 들어 의사에게 진단, 치료를 구하려고 하는 사태를 예상하면, 그러한 사회적 정황에 있어서는, 그자는 자기의 신체의 대해서 꽤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진단」이라고 하는 형태의 정보로서 보유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치료」라는 목적을 위해 이용할 것을 승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동의에 있어서는, 의사에 대해 자기의 신체적 상황에 대해 알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 스스로의 인격의 발전에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더구나 환자 자신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면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도 의사가 제3자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에는 당연 환자의 컨트롤권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자가 시내도로를 걷고 있어서, 우연히 때마침 한 여성이 계단을 내려올 때에 발을 헛디뎌, 보기만 해도 애처로운 자세로 계단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찰나적이라 해도 포착된 당해 여성에 대한 정보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설령 당해 여성에게 있어 부끄럽고 참혹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에 있어서는 그 여성의 인격적 이익에 위협을 가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여성의 컨트롤권이 미친다고는 생각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사회적 정황에서는 예를 들면, 그 여성의 굴러 떨어지는 자세를 사진으로 현상하게 되면, 역시 그 여성의 인격적 이익에서 보더라도 굴욕적(치욕적)인 「형태」의 정보가 취득되어진다고 생각되어, 컨트롤권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권리로서의 「자기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할 권리」의 내용으로서 어떠한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는 우선 타인에 의해 자신에 대한 일정의 형태와 내용을 가진 정보의 수집·보유 또는 이용의 행위가 자기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 의한 자신에 대한 정보의 수집·보유, 이용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혹은 금지시키거나, 또는 당해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폐기하거나 혹은 소멸시키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더욱이 타인에 의해 수집·보유 또는 이용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정보의 형태 또는 내용에 대해 부적당하다거나 또는 잘못된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시정하거나 또는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러한

자기의 컨트롤에 복종해야 할 정보에 대해 타인이 그것을 수집, 보유 또는 이용하는데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문제로서 당해 타인은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엑세스권한

자기애에 대한 정보를 통제, 조정하는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개인이 유효하게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해 개인에 있어 ①자신에 대한 정보를 어떤 주체가 수집,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함께 ②그러한 주체가 자기에 대해 어떤 형태와 내용의 정보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수집, 보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기 이전의 「자기애에 대한 정보로의 접근(엑세스)」의 문제이고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프라이버시권론의 구조에 있어서 「엑세스권」으로서의 인정여부에 대해 이것은 결국 일반적으로 권리로서는 인정될 수 없고 각 개인이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개다가 그러한 때에는 당연 역의 형태로 타인의 측에서 개인정보의 접근이 자유냐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문제로 되느냐이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일반론으로서 언급되어질 뿐이고, 예를 들면 공적 부문에서 개인정보와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기애에 대한 정보로의 엑세스」의 문제는 「개방된 정부」내지는 「참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법적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확립해야 할 것으로 일컬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정보공개의 이론적 근거인 국민의 「알권리」의 내용의 일부로서 쉽게 승인될 수 있다(타인의 엑세스권).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계약에 관한 사적거래 부문의 영역에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로의 접근」이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할 이론적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정보 조정 및 통제권설」에 입각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논의한다해도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sup>11)</sup>

그러나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자기자신과 시스템 계약과의 관계에서 일정 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때에는 자신의 「자신 개인에 대한 정보에의 엑세스」를 권리로서 법률상 승인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법 정책적 관점에서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도 법제도적으로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자기자신의 정보 엑세스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서는 전자시스템에 통합된 개인정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스템에 통합된 개인 정보는 통상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를 타고 멀리 제3자에게 제공된다거나,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자신을 떠나서 임의로 돌아다닐 가능성이 매

11) 정보공개의 역기능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영역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역으로 프라이버시권을 강조하다보면 국민의 알권리가 손상되기 때문에 양자의 균형점을 잘 찾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권은 엄격하고 예측가능하게 적용하되 침해가 드러나면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 높다. 그 때문에 개인자신에 있어 그와 같은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 스스로의 인격적 이익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막대한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자신의 「통제권」은 물론이거니와 「엑세스권」도 법제도적으로 보장해 둘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서 단순히 컴퓨터 처리가 되어 시스템에 통합된 개인정보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일정의 매뉴얼 처리된 것도 포함하는가는 법 정책적 견지에서의 과제로서 남아 있을 수 있다.<sup>12)</sup>

### III. 프라이버시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각국의 동향

#### 1. 구미제국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정보화사회로 불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유효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특히 사적거래 부문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자기자신의 정보접근(엑세스)이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더욱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①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또는 이용하는 개인정보시스템의 주체의 행위에 대해 무엇이 적정한 가를 판단하기 위한 행위원칙 혹은 행위기준이 확립되어 있을 것 ② 개인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정보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이것에 의해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구축 될 수 있게 고안되어 있을 것, 더욱이 ③ 개인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손해나 고통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절차나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이 제도적으로 요청된다. 여기에 대해 구미 각국의 예를 들면, 이미 1960년대에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이르러서부터는 잇달아 각국의 수준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혹은 개인정보(데이터)보호를 위한 입법이 성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13)</sup> 또 국제적 수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에 의해 1980년 9월 23일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데이터의 국제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가 채택되고 있다.

이 권고안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명목으로 개인data의 국제유통에 대해 부당한 장애를 제거하거나 또 그 같은 장애를 회피하려는 것에 노력할 것을 OECD 가맹 각국에 권고하는 한편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의 보호를 채택하는 가운데, 가맹국이 고려해야 할 몇

12)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정책 대안」에서 논하기로 한다.

13) 예를 들면 아메리카, 스웨덴, 뉴질랜드, 서독,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룩셈부루크, 아이슬란드, 영국 등의 각국(한국통신개발연구원, 세계의 프라이버시법, 1989, pp. 68-79.)

개의 기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 부속서 제2부 국내 운용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의 제도적 보호를 고려하는 가운데 특별히 참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데이터내용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⑤ 안전보호의 원칙(Security Safeguard Principle), ⑥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⑦ 개인 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 2. 미국과 EU

미국과 유럽연합(EU)<sup>14)</sup>은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채택키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합의로 국제간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에 관한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용, 개인정보의 악용 등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한국과 일본정부도 이 같은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므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도입이 예정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용도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 및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동될 수 있게 됐다. 모두 7개항<sup>15)</sup>으로 돼있는 이번 지침의 초점을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적극 규제하는데 있다.

정보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정보 이용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등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이를 인정키로 했다. 개인이 정보를 본인이 열람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 정보를 수집, 가공,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데이터 유출 및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개인의 이의 제기를 수용, 조사 구제 제재 등을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마련에 합의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규범 제정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 인터넷쇼핑을 비롯한 국제전자상거래를 크게

14) 미국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전자통신프라이버시보호법1986, 프라이버시보호법 1980, 금융프라이버시보호법1986, 전화소비자보호법1991, 연방기록법 등이 있고, EU는 1995년 "개인정보처리와 전송에 관련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지침"과 통신분야 개인정보 보호지침 (97/66/EC)을 채택하여 1995년의 지침을 발전시켜 1998년 10월 24일까지 동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정, 행정조례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병철, 전자거래법, 범원사, 1999, pp. 77-78.

15) 개인정보보호지침 - ①정보용도 및 항의 접속 창구 명시 ②제3자 정보제공 여부 본인 결정 ③위 조건을 갖춘 3자에게만 정보제공 ④정보의 분실, 악용, 수정금지 ⑤본래용도에 준할 때만 정보가 공허용 ⑥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접근 및 수정허용 ⑦정보에 대한 조사, 구제, 제재 수단 설치.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 3. 일본

일본에서는 국가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술한 OECD의 이사회권고의 챕터에 참가한 바도 있어, 국가 수준으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의 움직임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1981년 1월부터 행정관리청(현 총무청)에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회」가 신설되어 1982년 7월에는 OECD의 이사회 권고에서 제시된 기본원칙의 내용을 담은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보호대책」이라는 표제의 보고서가 행정청 장관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한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의 성립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보호의 향후 방향과 동향을 점치는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 보고서 중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5가지 원칙이 제시되고 더욱이 그 가운데 이것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시스템을 규제하는 데에 즈음하여 고려해야 할 10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이 보고서 중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5가지 원칙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①수집 제한의 원칙, ②이용제한의 원칙, ③개인 참가의 원칙, ④적정 관리의 원칙, ⑤책임 명확화의 원칙 등이다. 다음에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의거 규제하는 가운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개체하고 있는 10가지 항목으로서 ①개인 데이터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규제, ②개인 데이터 시스템의 공시에 관한 규제, ③개인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제, ④개인 데이터 이용, 제공에 관한 규제, ⑤개인 데이터의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제, ⑥개인의 권리에 관한 규제, ⑦수탁에 관한 규제, ⑧관할관청, ⑨개인 데이터의 국제 유통에 관한 규제, ⑩벌칙과 손해 배상을 열거하여 공적 부문, 민간사적 부문의 각각의 현상과 특성을 충분하게 이해하여 적절한 내용을 이곳에 담아서 일정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자의 항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관리청의 움직임을 전후로 해서, 당시 소비자에 대한 물품판매신용 및 금융용자 쌍방에서 급격한 여신의 팽창으로,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 정보의 가치가 갑자기 오르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의 운영이나 개인신용정보의 취급에 대해 배려할 필요성이 생기고, 여기에 대응해서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 정책부문의 보고서 「소비자신용 정보기관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1981년 12월4일)에서 소비자 신용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의 취급에 대해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의 역할의 증대와 함께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하고 있다.

(1)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 내지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의 수집, 축적, 제공을 하지 않을 것. (2) 수집된 정보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한정하고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게 함과 동시에, 그 범위도 여신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할

것. (3) 정보의 축적, 제공의 단계에 있어서 제3자에게 누설이 안되게끔 배려 할 것. (4) 소비자의 불안,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할 것.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기해서, 소비자 신용정보의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 배려해야할 구체적 사항으로서, ①운영방법의 명확화 및 기관의 존재, 취지의 철저, ②소비자 신용정보의 등록에 대해 계약서중의 등의 문언에 의거 소비자의 사전승낙을 득할 것, ③소비자의 등록된 신용정보의 본인에게로의 개시 및 사실에 반한 경우의 정정, ④등록된 정보의 범위의 적정화, ⑤정보등록 기준의 명확화, ⑥데이터의 누수방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⑦회원자질의 보전을 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계승되어 오고 있고, 게다가 1985년 4월 22일의 국민생활 심의회 소비자 정책부회 보고서 「정보시대의 소비정책」에서는, 일반론으로서 소비자 신용정보의 수준을 넘어,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이 보고서에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소비자의 니즈의 고도화, 개별화가 수반되는 시대에 사업자는 판매활동에서 개인의 정보를 중시하게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인 정보의 활용은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나 소비자 신용의 과잉 여신의 방지 등 소비자의 이익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의 부적정한 이용에 의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의 특징으로서 (1) 정보가 원격지에 있더라도 순식간에 전달이 가능하다. (2) 별도로 집적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집약되어 가공된다. (3) 한번 입력된 정보는 언제까지도 보존, 축적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징 하에서, 정보가 컴퓨터의 이용에 의해 집중화됨으로써, 정보가 부적정하게 수집,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개인정보의 집중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소비자 신용정보 분야에서는, 소비자 신용정보에 관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①개인신용정보의 수집·등록의 제한, ②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용의 제한, ③본인의 엑세스(개시청구, 정정변환) 등을 위한 수단의 보장, ④정보의 적정관리의 철저, ⑤소비자 피해의 미연방지의 철저 및 고충 처리 체제의 정비 등의 원칙에 기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급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확실히 구축하게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OECD이 사회 권고안이나 국민생활심의회 등 관계기관의 제언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포함하여 각방면의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신용 분야에 대해서도 전술의 행정관리청의 프라이버시 보호연구회의 보고서의 내용과 기틀을 따라한 경향이 있고 또 현실에서도 이를 각종 제언에 근거하여 업계에서는 소비자 신용 정보기관의 체재 정비와 소비자 신용정보의 취급의 적정화가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우리 나라에서도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입법을 마련하는데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 4. 한국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구체화한 것으로는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이 있다.<sup>16)</sup> 형법 제316조 2항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0조 3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 도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행법률로는 정보처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과 신용기관인 경우 적용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95)이 있다. 그러나 이를 법률은 각각 공공기관과 신용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뿐 상거래를 행하는 민간기업이 소유한 개인정보는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을 제한해오던 것을 지난 98년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는 통신사업자 등 민간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게 확대했다.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범위는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가족사항, 재산상태 학력, 병력, 통신내용 소비성향이나 취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정부가 확정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핵심은 본인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전파할 수 있게 한 점이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일단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는 어느 때나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 또는 타개인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 전에 수집자, 수집목적, 전화번호, 연락처, 이용자의 권리 등을 알려주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기업 또는 타개인이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수집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한 수집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제3자 제공이 금지된다. 또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해당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의무화돼있다. 수집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할 때는 다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규정을 위반할 때는 무거운 벌칙이 내려진다.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두절하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의 다른 규정을 위반할 때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밖에도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18조, 19조에서도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16) 헌법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IV.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

### 1. 포괄적 법 정책적 대안

이제까지 현대에 있어 프라이버시 권리의 내용이 전통적인 고려방식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하여 온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에서 미래에 걸쳐서까지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리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법 이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 거대한 컴퓨터-네트워크 중심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가 의문스럽다.

그러나 구미제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법」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명칭하에서, 일정의 시스템화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가지는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우리나라로 정보화의 진전상황을 보면 결코 예외일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선 전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서, 프라이버시 내지는 개인의 데이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OECD의 이사회권고가 채택되고, 또한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채택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적절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정보화 사회가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진전될 것을 예상해보면, 가까운 장래에 전자시스템계약에 의한 사적거래분야에 있어서도 자기화 되고 시스템에 통합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각종의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그 경우의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불비가 없게 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새로운 입법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 국제적인 동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OECD 이사회 권고회에서 시사된 제원칙과 미국과 EU간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국제기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밖에도, 일본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연구의 귀중한 성과인 행정관리청의 프라이버시 보호연구회에서 개제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5원칙 등, 이들의 원칙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서 개제하고 있는 10항목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적절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OECD권고 및 EU나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제원칙이나 유의점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열거해 보면, 대충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개인에게 개인정보 시스템으로의 엑세스 허용을 법제도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개인정보시스템의 주체와 권리관계를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개인

정보 시스템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집·축적 이용하는데 있어 행위원칙을 법률에 의거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 시스템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집·축적 이용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범위의 수집·축적·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적정한 것인가가 법률에 의거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정보 시스템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 정보 관리체계의 기준을 법률에 의거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④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당해 개인이 고충을 입었다고 주장한 경우를 위해, 법률에 의거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또 고충처리를 위한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현대적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권론으로서의 「자기정보 컨트롤 권설」을 토대로 해야할 것이지만, 공법 및 사법의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서 이 이론의 사정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엑세스의 공적부문의 영역에서는 「개방된 정책」 또는 「참가 민주주의」라 불리는 일반원칙에서부터, 「개인정보에의 엑세스」가 「알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지만, 시스템 계약에 속하는 사적거래 영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이론적 근거는 없다. 또 이밖에도 사법의 영역에서는, 개인정보가 그것을 수집해서 보유한자에 있어서는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인정보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보유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다던가, 유통이 된다던가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은, 자기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수집·축적·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기의 인격적 이익과의 관계에서 막대한 손해는 입을 수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해서 타당한 이익균형을 이를 필요가 있는 가운데에서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2. 개별적 법 정책적 대안

### (1) 대상이 되는 정보의 처리형태

개인정보와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가 법률상 출현한 이유로서는 급속한 기술혁신을 배경으로서, 정보처리 기술과 통신기술등의 결합에 의거 대량으로 신속한 정보의 처리와 함께 유통과 결합 등이 용이하게 된 컴퓨터 처리능력의 특성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자상거래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상은 컴퓨터 처리된 개인정보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일정형태의 매뉴얼 처리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매뉴얼 처리는, 그 처리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곤란하고, 컴퓨터 처리와 비교한 경우에 그 시스템 규모와,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매뉴얼 처리 형태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처리된 개인정보와 합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sup>17)</sup> 그러나 개인정보 대상 형태를 컴퓨터처리로 한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sup>18)</sup> 1) 개인정보의 처리에 수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컴퓨터 처리뿐만 아니라 매뉴얼 처리에서도 존재한다. 2)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컴퓨터처리를 행하는가, 매뉴얼 처리를 행하는가가 명확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 및 컴퓨터 처리와 매뉴얼 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고, 데이터처리 기술의 진보가 양자의 명확한 구분을 점점 더 곤란하게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 3) 또 데이터 보유자가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컴퓨터 처리를 행하지 않고 오로지 매뉴얼 처리로서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문제로서 매뉴얼처리의 개인정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해야할까 어떤가는 그것이 컴퓨터 처리의 것과 비교한 경우에, 어느 정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확실히 컴퓨터 처리에 의한 개인정보가 그 처리나 이용의 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되는 반면, 정보의 관리라고 하는 면에서는 컴퓨터 처리된 개인정보편이 쉽다. 오히려 매뉴얼 처리의 편이, 정보의 개조, 변조, 누설 등에 대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오늘날 명부나 목록을 보고 판매하는 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매뉴얼 형태로서 보유하고 이것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예도 보인다.<sup>19)</sup>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법규제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일정형태의 매뉴얼 처리된 개인정보도 보호의 대상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가 일정형식의 문서, 카드 내지는 목록으로서 검색 가능하게 분류·정리되어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 최소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정형태의 개인정보에 착안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구하는 입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전반에 걸친 보호는 아니어서, 법률의 명칭으로서는 각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법」보다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2) 개인정보의 수집·축적상의 규제

OECD의 이사회 권고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적 명확화의 원칙」을 열거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 「수집제한의 원칙」을 제시해두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정보수집범위를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가능하다는 정보수집범위의 최소한의 원칙을 들고있고, 또한 「개인 정보의 수집시, 수집목적을 명확화 함과 동시에 수집할 데이터의 내용도, 수집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수집은 적법, 공정한 수단

17) 林博道「データ・プライバシー の 保護対策 の 課題」, ジュリスト 増刊・高度情報 社會 の 法律問題, 1984, p. 208.

18) 日本行政管理廳 プライバシー 保護研究會, 「個人 データ 處理 に 伴う プライバシー 保護対策」, 1982, p. 59.

19) 방경숙,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 35-36.

에 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수집상 규제로서는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실제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서, 수집목적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그 목적에 부응한 개인정보의 수집·축적의 제한을 보증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확실히 시스템 계약에 있어서도 수집·축적된 정보의 주체인 개인과 개인정보 시스템주체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저절로 계약관계를 전개하고 있는데에서 목적이 명확하게 되고, 계약관계의 구조 내에서 수집·축적된 개인정보를 본인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집·축적된 정보의 주체인 개인과 개인정보 시스템주체와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시스템에 의거 수집·축적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다수의 시스템 관여자가 존재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더욱 많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본인은 자신의 정보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수집·축적되는가를 알기 위해 본인 자신에 대한 정보로 접근을 해야되는만큼 무시될 수 없는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더라도, 이것을 수집하는 시점에 있어 혹은 늦어도 시스템에 축적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요건으로 개인정보 시스템에 미리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수집한 정보와의 내용에 대해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정보 중 특별한 전과사실, 병력, 정치적 신조, 성생활, 학교성적 등 소위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취급할까도 문제가 된다. 외국의 입법 예를 보면 이러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관청에 의한 허가 내지는 예외로서 공공관청의 공고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sup>20)</sup>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직접 관련된 정보라는 것만으로 이러한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개인 정보의 수집, 축적상의 규제를 입법화하는 경우의 지침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집, 축적된 정보의 주체인 개인과 개인정보 시스템주체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시스템은 그 구조 내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및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수집 축적된 정보의 주체인 개인과 개인정보 시스템주체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시스템은 그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하고 최소 한도에서 또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침해의 우려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별의 다각적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시스템주체에 있어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이외의 사회적으로 일반적 이용 가능한 수단에 의하던가(예를 들면 우편에 의한 수집) 혹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 자신의 직접 또는 간접의 동의가 있는 범위에서만 그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 축적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 민감한 정보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 종류의 개인정보 시스템에만 인정하고 원칙적으로는 그 수집, 축적을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20)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또 당연한 것으로서 ④사기 그 밖의 부정 혹은 위법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 (3)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로의 엑세스권한

많은 구미의 입법에서는 개인 자신의 정보가 축적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열람청구권) 또 그 정보가 부적정하고 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이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정 소멸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의 권리는 자기의 정보로의 엑세스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후자의 권리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콘트롤할 권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이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수단으로서 증명서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열람한 정보가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해 정보의 주체인 본인과 개인정보 시스템주체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가도 문제로 남는다. 후자에 대해서는 관할관청하의 고충처리기관을 두어 거기에서 일차적인 분쟁을 조정을 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쟁점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결이 이루어 질 때까지의 기간, 당해 정보의 이용, 제공을 「봉쇄」하는 것도 입법상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전제로서는 우선 어떠한 개인정보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중 어떠한 개인정보 시스템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가를 개인에게 알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4)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상의 규제 및 개인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 유지

OECD의 이사회권고에서 「개인정보는 명확히 이루어진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용제한의 원칙」을 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내용 중 「개인정보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한 용도 이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용제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원칙으로서,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할 것이지만, 개인정보의 「이용」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인 개인정보의 제3자에의 제공에 대해서는,<sup>21)</sup> 민간부문, 특히 전자거래계약에 관해서는 업종, 업태를 초월해서 사방으로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계약의 수행상 불가결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관여자에게 제공됨으로 개인의 측에서도 사회적 · 사적인 욕구의 충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수집목적의 범위」에 얹매이게 함으로써 커다란 합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sup>22)</sup> 즉 폭넓은 고객에 상품정보제공이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또한 고객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전자상거래

21)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할 때에는 당사자 동의를 필요로 한다.

22) 우리나라의 경우 수집목적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고 수집목적 외 사용시 재차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활성화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어서, 이러한 쌍방의 요청에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개인정보의 타인에의 제공은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에 반드시 제한할 것은 아니고, 정보를 허락하는 경우도 거기에는 끊임없는 책임이 부여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개인정보가 또 다른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제공받은 3자가 제공된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축적 또는 이용할 것임을 당해정보제공자가 당해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책임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제공된 개인정보를 받는 제3자측에서 정당하게 당해 개인정보를 축적 또는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 대해서 일종의 「담보책임」 또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한국민법 580조).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개인정보 수령자로서 그리고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상당한 신뢰있는 상대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을 부여받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에 의해 개인정보의 유통의 요청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요청과의 양쪽을 잘 조정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통신사업자(시스템 제공자),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자 혹은 법률에 의해 특별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하는 것을 허락 받고 있는자(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제3자에게로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개인정보의 제공을 받아 이것을 개인정보 시스템에 축적하는 경우에 당해 정보의 주체인 개인과 계약관계가 없을 시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제공자는 본인에 대해 그 외의(기타의)방법, 수단에 의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의 정보를 축적하는 데에 대해 통지의무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한면으로 일컬을 수 있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의 유지를 하도록 개인정보 시스템 관여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것은 고도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시스템간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제공과 수령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유효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즉 일정의 개인정보는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므로 개인정보 시스템 관여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에 대해 당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부단히 정확하고 최신의 개인정보가 정보제공자에게서 수령자로 개인정보 시스템간 전달되어 지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기와 같은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받는 측인 수령자의 개인정보 시스템은 신뢰 있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 시스템을 선택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 결과로 상술한 개인정보의 제공상의 책임 등이 결합됨으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각 개인정보 시스템간에서는 「양질」의 유통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정보 네트워크도 국민에게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 가능할 것이다. 또 개인정보의 안전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시스템 관여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 대하여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한편 복

수의 개인정보 시스템이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때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 (5) 개인정보 축적기간에 대한 규제

일정의 개인정보가 이용, 제공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나 정보개공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해당정보를 파기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개인정보 시스템 관여자(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시간에 따라 갱신되어야 할 것으로 축적시 또는 최후의 갱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그 정보가 이용되지 않던가 또는 그 정보자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파기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기간으로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는 현상을 보다 잘 파악한 가운데 신중한검토를 요한다.

## V. 결론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한은 디지털광속경제 혹은 정보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 되어가고, 여기에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말미암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이용됨에 따라 컴퓨터 범죄나 그 밖의 심각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는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의 규제 수준이 달라 이러한 정보들이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 규제의 수준을 둘러싸고 통상마찰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로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통상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 맞물려 중요한 국면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프라이버시의 개념 및 이론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러한 변화를 기초로 우리나라로 시대적 조류에 맞게 그리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OECD 이사회 권고안이 채택되고 또한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채택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제적인 동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OECD 이사회 권고안의 제원칙과 미국과 EU간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이 고려 되야 하겠지만 그 밖에 일본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필요성을 위해서도 일본의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 등을 면밀히 조사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적절한 법률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처리 형태를 굳이 컴퓨터 처리된 정보만으로 국한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정형태의 매뉴얼 처리된 개인정보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 시스템업자에게 정보수집 목적의 명확화와 수집 제한의 원칙을 설정해둠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수집에 대해 본인과 정보이용 사업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정보가 이용되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제공업체(정보이용사업자)에게 본인에 대해 통지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이용업자는 또다시 제3의 정보 수령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시 본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제3의 인물 혹은 사업자에게 전달과정에까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므로 보다 양질의 정보가 유통될 수 있다.

끝으로 일정의 개인정보가 이용, 제공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나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해당정보를 파기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개인정보 시스템관여자에게 부과하게 하는 것도 적당하다. 이상과 같이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고 정착되면 이제까지 자기의 개인정보의 노출을 꺼려 전자거래활성화를 막는 큰 걸림돌이 해결되는 셈이며 진정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체정이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성환, 정보화사회의 역기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2. 고승철, “전자상거래의 정보보호”, 한국정보통신협회, 「정보화 사회」, 1997. 5.
3. 김기표, “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11호, 1996.
4. 박성준, “전자상거래와 정보보호 기술”, 「컴퓨터 월드」, 1997. 11.
5. 박순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3.
6. 방형숙,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7. 변재옥,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8. 이사범,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협회, 「정보화 사회」, 1997. 4.
9. 정찬도, “정보 보호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1997. 10.

10. 한국전산원,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1996.
11. 阪本昌成, 「情報公開表現 の 自由」, 成文堂, 1985.
12. 非川善太郎, コンピュータシステム と 取引法, 三省堂, 1987.
13. 内田晴康, インターネット 法, 商事法務研究會, 1997.
14. 近藤剛史, インターネット 法律實務, 新日本法規, 1997.
15. 林博道, 「データ・プライバシー の 保護對策 の 課題」, ジュリスト 増刊・高度情報 社會 の 法律問題, 1984.
16. 日本行政管理廳 プライバシー 保護研究會, 「個人 データ 處理 に 伴う プライバシー 保護對策」, 1982.
17.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2nd ed., Brown and Company, 1996.
18. Ian Walden and N. Savage, "The Legal Problem of Paperless Transaction",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19. Kalakota R. & Whinston, A. B., Frontier of Electronic Commerce, Addison-Wesley, 1996.
20. Reams, Bernard D., Electronic Contracting law : EDI and business transactions, Clark Boardman Callaghan, 1996.
21. Tilotson, John, Contract Law of Perspective, London : Butterworth & Co., Ltd., 1981.
22. Warren & Branda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 4, 1980.
23. OECD, Guideline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Paris, 1980.